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3. 3. 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2월 17일

나. 발 의 자: 김화영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3. 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화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. 보호자 등 이용자

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제2항)

○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○ 본 안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 례안임.

O 주요내용은

- 안 제5조제2항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,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9조의2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(민식이법)이 지난 해 3월 시행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,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안전 향상이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화영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제 316 호 번 호

발의년월일 : 2021년 2월 일

발 의 자 : 김화영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,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제2항)
- 나.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9조의2)

3. 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,「유아교육법」,

「초·중등 교육법_|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)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실태조사) (생 략)	제5조(실태조사) ① (현행 제목 외
	의 부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
	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
	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
	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제9조의2(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
	사현장 관리) ① 구청장은 어린
	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
	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
	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
	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
	있다.
	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
	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
	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
	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